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18일,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4.1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4.14.) 상정, 축조심사

제2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1.) 상정, 축조심사

제4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5.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훈기의원)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 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플랫폼 또는 유료 서비스 중심의 독점 중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 경우 국민 다수가 해당 행사를 자유롭게 시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행사가 갖는 공공적 성격과 방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와 중계권 제공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중계권 독점이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경쟁이 방송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정 플랫폼을 통한 독점적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가 중계권 제공, 공동 중계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복우)

○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어 해당사항 없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현의원(제2217305호), 한민수의원, 한정애의원, 신성범의원, 이훈기 의원, 최민희의원, 조은희의원 및 김현의원(제2217513호)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과 기업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함.
-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는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기업 공유를 통한 사회 통합, 정보격차의 해소에 있으므로, 국회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사각지대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에 찬성함.
- 보편적 시청권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국민의 접근권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성과를 지상파방송의 뉴스 전달력을 동원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지와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성 지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동계올림픽의 중계방송이 현행 법령상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보임.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